

의안번호	2202054
의 퇴 인	김원이 의원
회 답 일	2024. 07. 26.
추 계 번호	24A186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5 (대·중소기업상생 협력기금의 설치 등)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¹⁾ ,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 50조 및 제53조 ²⁾ 에 따라 징수한 <u>과징금</u> (제2호 신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제5항) －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사업(제6호 신설)	의무규정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범위만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단체에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의5제2호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설치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대기업 등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됨
 -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금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게 될 경우, 국고로 귀속될 과징금 규모가 감소하게 됨
 -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금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의 사업 범위 확대(동법 및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사업)는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 [참고자료] 상생협력기금 개요 및 현황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과징금 징수액·수납액은 법 위반 사항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고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향후 징수될 과징금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함
- 참고로, 최근 8년(2016~202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수납된 과징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표 1]의 2017년 「공정거래법」 과징금 수납액은 규모가 큰 1건(1조 311억 4,500만원)¹⁾이 포함된 것으로 연평균 616,606백만원과는 차이를 보이는 등 [표 1]의 자료로 향후 징수될 과징금 추이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1]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별 과징금 수납액 현황: 2016~2023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타(대규모유통업법 등)	
	건 수	수납액	건 수	수납액	건 수	수납액
2016	373	676,744	14	3,594	32	26,885
2017	345	1,358,525	42	7,924	35	43,320
2018	527	355,138	19	10,551	41	6,649
2019	289	267,625	36	24,517	23	7,554
2020	314	217,392	25	10,535	27	48,450
2021	398	752,955	27	24,377	35	18,476
2022	419	727,602	30	47,949	24	30,209
2023	351	576,868	20	6,173	35	45,307
연평균	377	616,606	26	16,952	31	28,3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제출자료

- 이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상 징수한 과징금을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게 됨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쉐컴 사 관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

[참고자료] 상생협력기금 개요 및 현황²⁾

□ 상생협력기금 개요

- (개념)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사용용도)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환경경영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활용 사업)
 - ① 동반성장 문화 확산 ② 구매조건부 공동R&D
 - ③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 ④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 ⑤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⑥ 대·중소기업 동반진출(해외 판로개척)
 - ⑦ 민간자율 기획사업 ⑧ 성과공유제 ⑨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 ⑩ 협력사 ESG 지원 ⑪ 협력사 PR챌린지 ⑫ 지역사회 동반성장 ⑬ 중대재해 감축예방 ⑭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출연혜택)
 - 세제혜택: ①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②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③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평가반영: ①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평가우대(3점)
 ② 공공기관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실적 평가우대(3점)

□ 상생협력기금 현황

<연도별 출연 및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누적기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연금	3,559	4,983	6,483	8,054	10,067	12,074	14,646	18,330	22,693	26,563
지원금	2,545	3,993	5,436	6,951	8,790	10,494	12,788	15,362	18,788	23,150

2)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